

공 고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-491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14호(2009.06.04)호로 정비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-67(2012.05.17)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-102(2012.07.19)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변경)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-93(2015.06.04)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변경)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 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6년 05월 12일

성 북 구 청 장 인

**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
주민공람·공고****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**
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공람 · 공고 내용

가. 사업명칭 :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 : 63,780.5㎡

라. 건축계획 : 지하5층/지상18층 19개동 공동주택(아파트) 1,199세대 및 부대복 리사설

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9,687.1㎡, 어린이공원 3,348.6㎡, 학교 1,605.4㎡

3. 공람기간 : 2016.05.12.~2016.05.26.(15일)

4. 시 행 자
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0길6 지층(동소문동3가)

○ 성 명 :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

5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4개월

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62)

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3673-3359)

7. 관계도서 : 삼선제5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사 업 시 행 인 가 공 람 의 건 서

사 업 명	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			
공 람 기 간	2016년 05월 12일 ~ 2016년 05월 26일			
대상물건지	건물 :			
	토지 :			
의견제출인	성	명	(인)	생년월일
	주	소		전 화 번 호
내 용				

2016. 05. .

인 사

《발령 제105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신 지 영	복 직 을 명 함 월 곡 제 2 동 근 무 를 명 함	행 정 국	지방사회복지 주 사 보

2016. 5. 9. 자

